



아시아계미국인의 법적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금

99 HUDSON STREET, 12th FL, NEW YORK, NY 10013-2815 212.966.5932 팩스 212.966.4303

“추방유예신청”(DACA) 이란?

서류 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서류 미비 젊은이 추방 유예” 대통령 행정 명령이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청소년들은 추방유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방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었다면 추방 유예신청 가능합니다:	잠깐! 아래의 이민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점에서 최소 15 세 이상; 2.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 세 미만; 3. 16 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자; 4. 2007년 6월 15일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5. 2012년 6월 15일 당시에와 현재 신청시점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6.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또는 2012년 6월 15일 현재 이민법상 신분이 만료된 상태인 자; 7.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고, 또는 검정고시 (GED) 를 통과 했거나, 전문 대학 수료 혹은 학사 학위 소지자, 미국 해안 경비병 혹은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가 있는 경우; • 6일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폭력, 성범죄, 착취, 강도, 불법무기 소지 및 사용, 마약 배포 및 판매,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등의 심각한 경범죄가 있는 경우 혹은 실제로 징역을 살았던 기간이 90 일을 초과하는 경우; • 3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혹은 • 국가 안전 혹은 대중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경우;
<p>추방유예 신청서는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p>	

혜택

추방유예는 신청자가 추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며, 추방 유예를 신청 할 때 노동허가도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운전 면허증과 소셜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가 승인되면, 경우에 따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제약 및 주의사항

추방유예 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며,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온 불법 체류 이민 청소년을 구제하는 드림 법안 또는 기타 법안이 미의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추방유예가 승인되면 2년간 추방 절차로부터 보호되며,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날 때쯤 이민국(USCIS)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도, 추방유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며, 추방유예 보호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추방유예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항소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중대한 이민법 위반이 있다면, 미 정부는 이송(추방) 절차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양식과 신청 방법을 보시려면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childhoodarrivals 를 참조하십시오. 접수 하시려면, 반드시 추방유예신청양식(I-821D)과 증빙서류, 노동허가 신청서와 워크 시트(I-765 와 I-765WS), 2 장의 여권사진을 함께 제출 하십시오.

증빙서류는 신청 필수 자격요건 7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는 “증빙자료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서 접수처

신청 접수처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다르므로, www.ucsis.gov/childhoodarrivals 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추방유예신청에는 신청료가 없으나, 노동허가 신청 비와 지문채취를 위해 이민국(USCIS)에 신청 수수료 \$465 - 지불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을 동봉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기 행위에 유의하십시오! 이 신청을 도와준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 자격을 갖춘 청소년의 가족은 본인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추방유예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갱신 방법

이미 추방유예신청이 되어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120 일(4 개월) 전에서 150 일(5 개월) 전 사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갱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I-821D, I-765 및 I-765WS 를 갱신 신청 수수료 \$465 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이민 및 범죄 기록 서류가 있지 않은 이상 보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서 양식은 www.uscis.gov/childhoodarrivals 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다음 AALDEF (아시아계 미국인의 법적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금)의 FAQ 에서 추방유예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http://aaldef.org/obamas-dream-act-directive-on-deferred-action----faqs.html>.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

AALDEF 에 연락하시려면 212-966-5932 로 전화 주시거나 info@aaldef.org 로 이메일을 주십시오. AALDEF 는 무료 추방유예신청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여 법률 상담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ALDEF 는 또한 서류 미비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단체를 통해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며 공정한 이민정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 하십시오.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 출생국에서 발급한 여권
- 출생증명서
- 여행관련 기록
- 재정 관련 기록 예)은행계좌기록, 세금보고서
- 각종 고지서
- 학교 관련 기록
- 고등학교 학위증, 검정고시(GED) 합격증
- 성적표 혹은 성적증명서
- 의료 관련 기록
- 군대 관련 서류 (인적사항, 건강)
- 최종 통보 및 추방 명령 혹은 이민 관련 서류
- 범죄 기록 및 범죄 검거에 관련된 법원의 처분관련 서류
- 지역 단체 지원 편지
- 기타 도움이 될 만한 서류들 예) 지역사회 유대, 참여도 및 수상경력들을 나타내줄 수 있는 서류